

# 예 산 총 칙

2020년도 추경 2 회

제 1 조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1,620,456,963	48,613,709
일반회계	1,271,469,323	38,144,080
특별회계	348,987,640	10,469,629
공기업특별회계	265,500,014	7,965,000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98,952,692	2,968,581
하수도사업특별회계	89,775,095	2,693,253
상수도사업특별회계	76,772,227	2,303,167
기타특별회계	83,487,626	2,504,629
주택사업특별회계	3,634,888	109,047
의료급여사업특별회계	4,619,948	138,598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436,909	13,107
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6,447,688	193,431
교통사업특별회계	20,897,978	626,939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22,502,547	675,076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24,947,668	748,430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 세입·세출 예산 " 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별첨 " 채무부담행위조서 " 와 같다. (해당없음)

제 4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 계속비사업조서 " 와 같다.

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 명시이월사업조서 " 와 같다. (해당없음)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4,644,983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일반 및 특별회계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65,100,000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제 9 조 금회 추경예산 제출 후 내시된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국도비보조금 등은 예산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이를 서면으로 의회에 보고한다.